

(재)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 - 185호

- WAVE(울산세계미래박람회) 2025 동시개최-
ULSAN Neuron AI+ 2025 참가기업 모집 공고

(재)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인공지능·디지털 중심의 중소·중견기업의 네트워킹 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「ULSAN Neuron AI+ 2025」의 부스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9월

(재)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

1 개요

- 행사목적
 - 인공지능, 디지털 등 ICT기술과 신산업(UAM, 스마트선박 등), 지역 문화 자원 등을 활용한 콘텐츠 체험을 통해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
 - 인공지능, 디지털, ICT기술 및 신산업(UAM, 스마트선박 등)관련 산업체 부스 운영
- 행사명 : ULSAN Neuron AI+ 2025
- 행사기간 : 2025. 11. 12. ~ 11. 14.(WAVE 2025 동시개최)
- 전시품목 : 인공지능, 디지털, ICT기술, 신산업(UAM, 스마트선박 등)관련 제품 및 솔루션 등
- 모집방법 : 선착순
- 지원사항 : ULSAN Neuron AI+ 2025 內 기업 전시부스 공간 임차

2

지원 내용상세

○ 지원분야

구분	세부내용		
ULSAN Neuron AI+ Zone	부스임차	독립 부스	바닥면적만 제공 (3m×3m= 9㎡) *최소 부스 수: 4개
		조립 부스	시스템부스(옥타늄 조립식 판넬), 안내데스크/접의자(1조), 바닥 방염파이텍스 (9㎡), 상호간판(현수막출력(국·영문) 1조, 기본조명 (Spot 3EA), 콘센트 1EA(2구), 전기 1KW(조명용 500W 포함)

○ 지원대상 :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※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

○ 지원제외 대상

- 지방세 체납기업 및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기업

3

지원자격 및 선정방법

○ 신청 기간 : 2025. 9. 1. ~ 9. 30. (신청 마감시 까지)

○ 선정 방법 :

- 적격성 검토 : 지원신청서 및 전시사항(산업, 전시 콘텐츠 등)관련 증빙서류 검토를 통한 지원요건 충족 여부 검토
- 적격심사 요건 충족 시 지원 희망기업 선정

○ 지원 절차



○ 선정 방법 : 적정성 검토

○ 선정 평가 : 신청서 내용 기준 (일반현황 등)

○ 선정 일정 : 신청접수 후 2주 이내 개별 안내

4

신청방법

○ 제출서류 : 첨부 신청서 서식이용

○ 신청방법 : 제출서류 담당자 이메일 제출

- 제출처 : wooa3731@uipa.or.kr, (문의: 052-210-0211(경영지원팀))

○ 신청서류

번호	서류명	비고
1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붙임1
2	참가 신청서	붙임2
3	참가 서약서	붙임3
4	지방세 납세증명서	별첨(울산광역시 발급)
5	사업자등록증	별첨(관할 세무서)

5 신청시 유의사항

- 본 공고는 WAVE 2025 공동개최행사인 ULSAN Neuron AI+ 전시공간 중 일부를 기업에게 제공하고, 기업이 해당 공간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임
- 참가기업 모집은 우리원 내 배정된 부스 범위 내에서만 실시되며, 신청이 마감되면 지원이 자동 종료되는 사업임
-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사업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또는 휴·폐업중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선정 이후 신청내 취소될 수 있음

WAVE 2025(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) 참가규정

제 1조 용어의 정의

- ① 「전시회」라 함은 “WAVE 2025”를 의미한다.
- ② 「전시자」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‘참가신청서’를 제출한 기업, 기관, 협회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의미한다.
- ③ 「전시품」이라 함은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전시품목을 의미하며, 전시자가 제조·판매 등을 하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.
- ④ 「주관사」라 함은 “(재)울산문화관광재단(이하 재단), 울산테크노파크, 울산정보산업진흥원, (사)한국수소산업협회”를 의미하며, 「전시회 사무국」은 “(재)울산문화관광재단” 내에 설치·운영한다.
- ⑤ 「주관사」가 타 기관으로 변경되어도 본 계약은 승계되며 협약 내용은 유효하다.
- ⑥ 「참가규정」이라 함은 전시회와 관련해 전시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말한다.

제 2조 참가신청

- ①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(사본)을 제출한다.
- ② 주관사는 전시장 면적이 소진되었거나 참가신청서 상 전시품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.
- ③ 전시자는 참가접수를 “WAVE 2025” 오프라인 또는 홈페이지(도메인주소)를 통해 접수한다.
- ④ 오프라인 및 홈페이지 접수 시, 재단의 승인통보를 기점으로 참가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.

제 3조 전시품 규정

- ①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한 경우 주관사는 이를 중지,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.
- ② 전시자는 합법적인 협력관계 혹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불법적인 제품이나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제품도 전시할 수 없다.
- ③ 전시자는 전시회 기간 중에 판매된 전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
제 4조 부스의 배정

- ① 부스 배정은 부스 참가규모(전시면적), 신청일자, 전시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관사가 결정하며 전시자는 부스 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② 전시면적은 전시자에게만 사용이 허용되며 전시자는 배정받은 전시면적을 주관사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분할, 상호간 교환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, 이에 준하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관사는 전시자의 참가를 취소할 수 있고 전시자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.
- ③ 「주관사」중 전시장 배정 등에 대한 부분은 재단이 진행하며, 그 외 공동주관사는 배정된 Zone 내에서 부스 배정에 대한 부분을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한다.
- ④ 주관사는 전시자의 전시효과와 관람자 편의를 위하여 참가규모, 전시품목,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부스위치를 배정하며 주관사의 고유 권한으로 사정에 따라 부스 배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- ⑤ 주관사가 전시회의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치한 전시자는 위치배정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.
- ⑥ 참가신청 면적이 주관사가 확보한 전시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주관사가 모든 전시자의 신청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
- ⑦ 주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에 전시자에게 배정된 부스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⑧ 주관사는 정부행사 추진 등 특별한 경우 전시회의 설치 기간 이전에 언제든지 할당된 전시자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주관사의 부스 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 5조 전시회 취소 및 변경

- ① 주관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<태풍, 홍수, 지진, 화재, 질병으로 인한 특정지역 봉쇄(또는 폐쇄), 전시장 파손 또는 붕괴, 전시회 또는 집회 등에 관한 정부의 집합 금지 권고 등>으로 인해 전시자 또는 방문객의 참가가 불가능하거나 전시장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주관사는 전시회를 취소 또는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② 주관사가 천재지변, 정부의 요청, 전염병, 긴급사태 발생 등 불가항력이나 주관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전시회를 취소 또는 변경, 중단할 경우에 주관사는 이러한 사유로 전시자에 발생한 손실(전시 장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 등)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.
- ③ 주관사는 원활한 전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시회의 기간과 개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제1항과 같이 주관사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.

제 6조 배상의 책임

- ① 주관사는 전시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.
- ② 전시물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으며 주관사는 전시품목의 분실, 파손, 화재 등으로 인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③ 전시자는 전시기간(설치 및 철거기간 포함) 중 전시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난이나 화재, 재산손실, 상해, 제3자 손실, 사고, 재난(재해),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전시회 연기, 조기 폐막 및 취소 등에 대비해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로 인한 결과에 대해 주관사에게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.
- ④ 전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,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한 타 전시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 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.
- ⑤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,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면적 내 손상, 도난, 화재나 안전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.
- ⑥ 전시자가 전시장, 타인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주관사에게 하자담보책임, 손해배상책임 등 민형사 행정상 법적 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전시자는 민원처리, 소송, 기타 법적 대응 등 주관사를 면책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, 만일 제3자의 청구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주관사가 비용을 지불한 경우 전시자는 즉시 그 비용을 주관사에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.
- ⑦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, 천장, 기둥,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자관의 원상회복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.

제 7조 부스설치

- ① 분진을 발생시키는 전기대패, 전기톱 등의 공구는 전시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.
- ②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내에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,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.
- ③ 시간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해당일 전시장 사용 마감시간 2시간전 ‘시간외작업신고서’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시간외 사용에 대한 추가비용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유에코(UECO) 임대 규정에 의거 전시자가 납입해야 한다.
- ④ 설치 및 철거는 주관사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주관사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 8조 보험부보

- ① 주관사는 전시기간 중 전시장 내 발생할 수 있는 관람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(영업배상책임보험)에 가입한다.
- ② 전시자는 부스설치 및 철거기간을 포함한 전시회 기간 동안 자사 부스에서 관리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9조 전시장 운영

- ① 조립부스는 주관사가 제공하는 형태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관사 서면 승인 없이 상호 간판과 글자를 포함한 기본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. 또한 전시품 및 시설물을 주관사의 사전 승인 없이 기본 구조물 높이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.
- ② 전시자는 행사 폐막 이전에 주관사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으며, 폐막 후 주관사가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모든 전시품 및 관련 물품 일체를 전시면적에서 자체 경비로 철거해야 하며, 전시면적은 처음 배정받은 당시의 깨끗한 상태로 반납되어야 한다.
(잔존물이 있을 경우 1루페당 300,000원(vat별도) 청구)
- ③ 주관사는 전시자가 동 참가규정과 전시장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시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- ④ 전시자는 주관자가 지정한 등록 시공업체 외의 업체와는 별도로 협약을 맺지 않는다.
- ⑤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(booth)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⑥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전시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⑦ 전시자는 부스 내에 참가신청이 되지 않은 기업의 홍보물 또는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. 필요할 경우, 반드시 사전에 재단과 협의의 통해 승인을 득해야하며, 만일 사전 참가신청이 되지않은 타 기업 홍보물, 카달로그, 전시품이 부스 내 전시되어 있을 경우 주관사는 이를 부스 양도로 간주하고 전시자의 부스를 철거함과 동시에 향후 본 전시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10조 음향기기 및 냄새 제한

- ① 스피커 등 음향기기는 지상으로부터 1m이하로 설치하고 방향은 자사 부스 내로 향하게 하여 설치해야 한다.
- ② 부스 내 음향기기를 이용한 홍보 시 음원으로부터 반경 1m 이내 지점에서 측정할 수치 기준으로 65db를 넘을 수 없다. 기준 수치 초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관사는 해당 부스의 전원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③ 전시장 내 악취가 나는 전시품/물품을 전시/사용하는 경우 주관사는 악취 발생근원이 되는 전시품/물품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.

제 11조 중량물 제한

- ① 전시장 지반구조에 따라 전시품의 중량이 제한되며, 1개의 전시품이 1㎡당 3ton 이상일 경우와 총중량이 5ton이상일 경우에는 주관사와 사전협의 후 승인을 거쳐 반입하여야 한다.
- ② 전시품의 반입/반출 과정에서 5톤이상 지게차/화물트럭 등은 전시장내 진입 할 수 없다.
- ③ 총 중량 20톤 이상의 장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시장으로 반입 할 수 없다.

제12조 위험물 관리

- ① LPG 등 발화가스 기구는 전시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, 기타 가스기구 및 전열기구는 전시회 개최 40일전 '위험물 반입/반출신청서'를 주관사에게 제출 후 승인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이외 위험물은 주관사와 협의 후 전시회 개최 30일전 '위험물 반입/반출 신청서' 제출 및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.

제 13조 방화규정

- ① 전시자는 전시장의 모든 소방, 전기 및 시설의 안전 등에 관한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- ②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 및 설치물, 장치물 등은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방염 및 불연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.
- ③ 주관사는 필요에 따라 화재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시정을 전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 14조 전시품의 실연

- ① 전시자의 장치, 가구배치, 제품전시, 상담, 시연 및 홍보 활동은 배정된 전시 면적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벗어날 수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위험물품을 전시면적 내에 보관할 수 없다.
- ② 전시품의 실연은 인체·재물에 대한 안전과 타 전시자 및 관람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연해야 한다.

제 15조 전시장 보세구역 설정

- ① 전시자는 해외에서 전시품을 반입하는 경우 전시회 개최 40일 전까지 보세전시품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② 주관사는 전시자가 보세전시품 신고를 한 경우 전시장을 보세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절차를 추진하여야 한다.
- ③ 해외에서 보세품으로 전시품을 반입한 전시자는 전시회 종료 이후 전시품을 해외 반출 시켜야 한다. 만약 국내에서 전시품을 사용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④ 전시자는 보세 전시품의 국내반입 및 해외반출 관리를 위해 주관사가 지정한 협력업체를 이용하며, 무단 반출입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.
- ⑤ 주관사는 전시자가 해외에서 전시품을 반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.

제 16조 개정 및 준수

- ①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을 개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. 주관사가 정한 보충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로 간주되며 전시자에게 효력을 미친다.
- ② 전시자는 주관사 및 전시장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17조 분쟁해결

- ① 전시회와 관련된 문제 중 동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사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.
- ②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관사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쌍방 간의 권리, 의무에 관한 분쟁은 울산지방관할 법원의 판정을 따른다.
-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부산 소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 중재판결에 따라야 하며, 당해 중재판정을 최종으로 한다.

제 18조 기타사항

- ①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증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며, 또한,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유에코(UECO)의 제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.